



## 제 2 부

---

#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8장 기타 사례

# 기타 사례

### 기타 사례 01 2024서울조정2364·2365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기타)

사건 담당 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요해 논란이라는 보도와 관련, 취재기자가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 중 한 명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고 보도한 점을 고려하여 정정보도와 열람차단 및 경찰관에 대한 접촉, 후속보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경찰서 팀장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장 A 씨는 모 카페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직원이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신청한 진정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해당 카페의 본사 대표직을 맡았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강요했다. 그 후 진정 건과 B 씨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C 씨에게도 출석을 강요했다.

A 씨가 B 씨 등에게 출석을 강요한 당일은 진정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기에 수사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A 씨는 C 씨가 ‘국민연금 체납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냐’며 죄목에 대해 따져 문자 말을 돌리는가 하면, ‘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점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C 씨가 출석이 아닌 근무지 직접 조사를 요청하자 동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C 씨는 A 씨가 본인과 B 씨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대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전화진술 등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A 씨는 조사를 강요한 것이다.

#### 신청이유

신청인(○○○○경찰서 A팀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주 B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며, B가 대표자였기에 단순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경위를 청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은 C로부터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C도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C는

자신이 기자라면서 참고인 신분인데도 출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기사로 공론화하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자 C가 자신에 관한 사안을 마치 다른 사람의 사건인 양 보도하였고, 보도 내용 또한 심각하게 왜곡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정서 접수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까지 4개월이 걸린 점에 대해 수사청탁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신청인은 입건 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에 부당한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피신청인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이미 사임한 전 대표 B를 피의자로 단정한 점, 사건 배당 주체인 팀장이 담당 수사관이라는 점, 한 차례 조사 이후 반복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참고인 신분은 출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조사하려 해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정대상보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찰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인데 그 수사진행 절차에 불만을 보이며 비협조적이었다는 것과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이는 자신의 사건을 마치 제3자의 사건인 양 보도하면서 경찰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연락 당시 신청인의 태도가 부적절했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취재할 때 민원인으로 접근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중재부는 취재기자가 민원인을 사칭해 취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취재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상파 기자들이 민원인을 사칭해 증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의견을 존중해 신청인과 피해구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은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정정보도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도가 이행된다면 손해배상은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노출이 차단된 조정대상보도를 완전히 삭제한 후 정정보도하고 향후 신청인에 대한 연락 및 후속보도를 금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제8장

### 기타 사례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단독] ○○○○췁 팀장, 현행법 무시 ‘참고인 출석’ 강요…비협조에 “업무횡령죄 적용” 협박>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지난 7월 9일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단독] ○○○○췁 팀장, 현행법 무시 ‘참고인 출석’ 강요…비협조에 “업무횡령죄 적용”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서 A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출석을 강요한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건 전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기사 속 ‘C 씨’ 본인임에도 알리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 기타(신청인 접촉 및 후속보도 금지 합의)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외 다른 내용으로도 신청인에게 연락하거나 신청인 관련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사례 02 2024서울조정2263·2264, 2024서울조정2265·2266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기업체 및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모 화가의 작품에 위작 논란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당 작가의 작품을 상업적 전시회에 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피신청인 사과, 향후 반론권 보장을 골자로 조정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①·②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1912~1979)이 그린 작품 ‘△△△’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근대미술품 수집가인 제보자 K 씨는 2023년 Y 화랑에서 열린 근대화가 ○○○의 작품전에 출품된 ‘△△△’과 1937년 선전 입선작 도록에 수록된 ‘△△△’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K 씨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 도록의 ‘△△△’을 대조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또 K 씨는 “단순한 위작이 아니라 매우 허술하게 위조되었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1985년부터 소장해 왔으면서 어떻게 도록과 비교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명했다.

③·④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었던 A는 임명된 지 3~4개월 만에 ○○○의 전시를 연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업무 처리가 적발되어 사의를 표명했다. A 전 관장의 사임 석 달 후 Y 화랑에서 ○○○ 전시가 시작됐다. 당시 Y 화랑은 ○○○의 자녀 B 씨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100점 이상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이 중 4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전시였지만 Y 화랑은 상업갤러리이므로 작품 한두 점을 판매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A 전 관장의 허가 하에 작품들이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신청이유

○○○ 화백의 아들인 신청인2.(B)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1985년에는 선친의 작품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미술학계 및 평단의 평가와 평론이 부재했기에 작품을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개인 소장에 따른 멸실 우려가 있어 국가가 영구 보존해 주기를 희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1985년 작품 기증 과정에서 도록 비교 및 진품 감정 등 평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

신청인1.(Y 화랑)은 전시 작품 대여 규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A 관장의 사퇴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반출된 사안이며, 신청인1.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 대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작품 기증자인 신청인2.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대여받았던 것이고, 신청인1. 화랑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품 판매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1. 및 신청인2.는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피신청인이 오히려 추가 보도를 예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기에, 신청인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 언론사별로 각 조정대상보도에 해당하는 정정보도문 2건 게재와 5,000만 원(신청인별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서 소장품에 대한 부실관리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감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으며, 후속기사도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 후 국립현대미술관의 요청을 받고 반론을 추가하고 당사자들에 대해 익명 처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3차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음을 짚으며 합의 조건으로 반론보도 외에 피신청인의 사과를 추가하고자 했다. 피신청인이 난색을 표명하자 중재부는 양측이 사전에 조율한 조치사항만 합의서에 포함하고 사과 부분을 심리석상에서 구두로 유감 표명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자고 권유하였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반론보도를 이행 및 향후 보도 시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①·② **[전략]** 최근 국현이 소장한 작품 가운데 ○○○(1912~1979)이 그린 1937년 작 ‘△△△’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본지로 접수됐다. **[중략]**

제보자인 K씨는 근대미술품 수집가로 지난해 7월 XX일부터 9월 XX일까지 두 달간 서울 강남구 Y화랑에서 열린 근대화가 ○○○의 작품전에 출품된 ‘△△△’과 1937년 제16회 선전 입선작 도록(중앙도서관 소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K씨는 이 작품이 국현에서 대여해 온 소장품인 것을 알고는 국현 홈페이지의 ‘소장품’(미술은행이 아닌) 카테고리에서 게시된 ‘△△△’과 도록의 ‘△△△’를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략]**

결과는 놀라웠다. 분석 결과 두 그림은 눈매가 완전히 달랐고 얼굴형에도 차이가 있었다. 도록 속

소녀는 광대뼈가 도드라진 것에 비해 국현 것은 광대뼈 없이 매끄러운 얼굴형이었다. 더 분명한 것은 소녀의 왼쪽 눈초리가 도록은 페이스라인에 닿아 있는 반면 국현 소장품은 얼굴 안에 쑥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귀밑머리와 옷깃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벨트 장식에 있어 도록의 것은 직사각형인 것에 반해 국현의 것은 사다리꼴에 가깝다는 것이다. 벨트 장식의 두께가 다른 것은 물론이다. 그밖에 머리핀 장식과 머리카락 끝부분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단순한 위작이 아니라 매우 허술하게 위조된 작품이었다. 숨은그림찾기를 해도 될 정도였다.” **[중략]** 그가 가장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국현이 이 작품을 1985년부터 소장해 오면서 어떻게 도록과 비교한 번 안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현은 작품을 입수하던 1985년 ○○○ 전을 개최했다(○○○의 첫 전시회는 1984년 A의 기획 아래 서울 롯데미술관에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월북 예술가 해금 조치가 이루어진 게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7월의 일이기 때문이다. **[후략]**

③·④ **[전략]** A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국현) 관장에 임명됐다. **[중략]** 공교롭게도 그가 임명된 지 3~4개월 후인 2019년 5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관에서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1 절필시대’전이 열리고 이때 다시 한번 ○○○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중략]** A가 국현 관장에 임명되자마자 ○○○ 전시를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중략]**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검감사에서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가 적발되면서 작년 2023년 4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23년 7월 Y화랑에서 ○○○ 전시가 시작됐다. 그가 사임한 지 불과 석 달 후의 일이다. 당시 Y화랑은 120~130점이나 되는 작품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전부 1930~1950년대 ○○○이 그린 작품이라고 했다. Y화랑 측은 본지와와 통화에서 대부분 둘째 아들 B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4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해 온 것이라고 했다. 4점은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을 비롯해 ‘□□□’ ‘◇◇◇’ ‘☆☆☆☆’이다.

그 밖의 외부 대여는 없었다고 했다. 무료 전시였지만 Y화랑은 상업갤러리이므로 당연히 작품 판매가 이루어졌다. 당시 판매된 ○○○ 화백의 작품은 한두 점에 불과하다는 게 Y화랑 측의 주장이었다. **[중략]**

#### **상업갤러리에 소장품 불법 대여한 국현**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상업갤러리인 Y화랑에 △△△ 등 소장품 4점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 **[중략]**

누가 승인했든 적법하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4절 제36조(소장작품의 대여) ②항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Y화랑 측은 2023년 7월 XX일 ~ 9월 XX일 개최된 ‘○○○ 전’에서 “한두 점이 판매됐다”고 본지에 밝혔다(기사가 나간 후 화랑 대표가 본사를 방문하여 전시회가 끝난 후에 판매된 것이라고 정정 요구를 해왔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①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① 도록과 다른 그림>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24. 7. 7.자 문화면에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① 도록과 다른 그림> 제하의 기사에서 ○○○이 그린 1937년 작 ‘△△△’ 작품의 도록 사진과 실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위조된 작품으로 확인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한 번도 도록과 비교해보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Y화랑 및 ○○○ 화백의 둘째 아들 B 씨는 “도록과 실물 그림과의 비교 과정에서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작품은 위작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문 ②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② 국현 소장품 대여 적법했나>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24. 7. 8. 자 문화면에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② 국현 소장품 대여 적법했나> 제하의 기사에서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A 관장의 사의표명 석 달 후에 Y화랑 ○○○ 전시가 시작됐고, Y화랑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작품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Y화랑 및 ○○○ 화백의 둘째 아들 B 씨는 “전시작품 대여는 A 전 관장의 사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Y화랑 전시 중에는 작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품 대여는 Y화랑이 아닌 기증자 B 와 국립현대미술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반론보도문 ①과 반론보도문 ② 제목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문화면 상단에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각 반론보도문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함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반론보도문 ①의 본문을 조정대상보도 ②의 하단에, 반론보도문 ②의 본문을 조정대상보도 ④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기타(반론권 보장)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보도를 일체 중지하고, 향후 신청인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경우 반드시 입장을 청취하여 보도한다.

## 기타 사례 03 2024제주조정23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유튜브 채널
처리결과	조정성립(동영상 플랫폼 조치, 기타)

공항 보안검색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반려동물이 놀라 주인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 기사를 제보하고 촬영에 동의한 신청인이 악성 댓글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어 유튜브에 전제한 보도와 쇼츠(Shorts)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A 공항에서 보안 검색 중 고양이가 주인을 공격하여 심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인 측에 따르면 보안검색 직원이 케이지에서 고양이를 꺼내 목줄을 풀어달라 요구했고, 놀란 고양이가 주인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검색장 일대에 소동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은 규정에 따라 케이지에 넣고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시키거나 주인이 안고 이동해야 하는데, 주인이 안고 가길 원했으며 목줄에서 금속 반응이 있어 위해 물품 또는 폭발물 검사를 위해 빼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 신청이유

고양이 주인인 신청인은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여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사나운 반려동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목줄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당시 폭발물 검사 관련 안내가 없었고 공항 측 인터뷰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닌 책임자의 답변일 뿐이라면서 공항 측의 인터뷰는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스 영상에 나온 고양이 목줄 사진은 신청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서 삭제되기를 희망했다.

신청인은 해당 영상이 동물을 혐오하고 학대하는 정보가 오가는 사이트에 공유되고 자신의 신상까지 밝혀져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기사삭제 청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신청인은 보도문 게재보다 기사삭제가 되기를 원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취재는 신청인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신청인이 해당 사진도 직접 제공했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 보안검색 책임자의 인터뷰는 사실관계

확인 및 공항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제보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보도에 동의했지만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실명 보도에 대해 동의를 받았음에도 익명 처리를 요청받은 후 바로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조치를 하였고 유튜브 채널과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들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제보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 내용이 자극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고,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 및 본사의 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뉴스 영상과 관련 쇼츠에서 신청인의 신체와 고양이, 고양이 목줄 사진을 삭제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담당 기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앵커] [중략]

최근 고양이를 데리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주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리포트] [중략]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A 공항 보안 검색을 받다가 고양이가 물고 할퀴 겁니다.

\*\*은 보안검색 요원이 안고 있던 고양이 목줄을 강제로 풀게 하는 등 대응이 미흡해 고양이가 놀랐고,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 [전화 인터뷰 : 고양이 주인]

“애초에 처음부터 목줄같은 것도 다 검색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뭐 이런 방사능이나 이런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쪽으로 그냥 넣어서 케이지(가방)에서 안 꺼냈을 거예요.”

고양이 난동 사건이 난 건 지난달 XX일. ○○에서 △△으로 이사를 가며 데리고 가던 고양이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놀란 겁니다. [중략]

하지만 A 공항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규정에 따라 가방 안에 넣고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시키거나 주인이 안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 안고 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또, 고양이 목줄에서 금속 반응이 나와 목줄 검사를 하려 했고, 목줄을 빼 줄 것을 요청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 인터뷰 : B 씨 / □□□□공사 ○○공항 ◇◇◇◇부장]

“해당 목줄은 위해 물품이나 폭발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기에 제거 후 대인검색대를 통과해달라고 안내드렸으며 목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동영상 플랫폼 조치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한 <보안검색대 통과하다 다쳐...반려동물 어떻게?> 제목의 ○○☆☆☆-TV 뉴스 영상 및 이와 관련된 <▽▽▽▽> 쇼츠 영상에서 신청인의 신체 모습, 신청인의 고양이 사진 및 고양이 목줄 사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 본사가 ☆☆☆-YouTube 채널에 게재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뉴스 영상 및 유튜브 쇼츠 영상에도 조치사항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 기타 (신청인 사과)

- 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 소속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사과한다.